

의안번호	2214694
의 퇴 인	김승수의원
회 답 일	2026. 1. 26.
추계번호	25C6513

캐릭터산업 진흥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,000만원(연평균 1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)	90	-	-	-	-	90	1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캐릭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4조(캐릭터산업의 활성화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 관련 박람회, 전시회,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산업에 기여하는 캐릭터사업자 및 캐릭터산업 관련기관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3	안 제5조(전문인력의 양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대학·연구기관,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6조(기술개발의 촉진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터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7조(협동 개발 및 연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8조(유통활성화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의 불법 복제·유통 방지,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1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국가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캐릭터 창작 등 지원)	국가는 캐릭터의 창작·기획·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지원금, 시제품 제작 지원, 투자 연계,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3조(지식재산권의 계약 등 지원)	국가는 캐릭터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허락, 실시권 설정, 양도, 그 밖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간 계약 지원, 법률·세무·특허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4조(캐릭터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를 활용한 융합·복합 상품 개발, 지역축제·관광 연계 산업, 교육·공공서비스 활용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장려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15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전시회 등의 국내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12	안 제16조(통계의 작성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캐릭터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·관리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
2	안 제4조(캐릭터산업의 활성화)	×	- 실시 중
3	안 제5조(전문인력의 양성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4	안 제6조(기술개발의 촉진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5	안 제7조(협동 개발 및 연구)	×	- 실시 중
6	안 제8조(유통활성화 등)	×	- 실시 중
7	안 제11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×	- 실시 중
8	안 제12조(캐릭터 창작 등 지원)	×	- 실시 중
9	안 제13조(지식재산권의 계약 등 지원)	×	- 실시 중
10	안 제14조(캐릭터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)	×	- 실시 중
11	안 제15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×	- 실시 중
12	안 제16조(통계의 작성 등)	×	- 실시 중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다수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재정수반요인	현행 사업(2025년 기준)
안 제4조(캐릭터산업의 활성화)	-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개최(800백만원) - 캐릭터산업 백서 발간(94백만원) -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(캐릭터 부문)(64백만원) - 라이선싱 콘퍼런스 개최(500백만원)
안 제7조(협동 개발 및 연구)	-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(4,569백만원) - IP 라이선싱 빌드업(700백만원)
안 제8조(유통활성화 등)	-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개최(800백만원) - 캐릭터 해외마켓 참가 지원(1,026백만원)
안 제11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- 신규 캐릭터 IP매니지먼트 지원(220백만원)
안 제12조(캐릭터 창작 등 지원)	- 신규 캐릭터 IP 기획개발 공모전(350백만원) - 신규 캐릭터 IP매니지먼트 지원(220백만원)
안 제13조(지식재산권의 계약 등 지원)	- 신규 캐릭터 IP매니지먼트 지원(220백만원)
안 제14조(캐릭터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)	-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(4,569백만원) - IP 라이선싱 빌드업(700백만원)
안 제15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	- 캐릭터 해외마켓 참가 지원(1,026백만원)
안 제16조(통계의 작성 등)	- 캐릭터산업 백서 발간(94백만원) - 콘텐츠산업조사* (520백만원) * 캐릭터, 출판, 영화, 게임 등 개별 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 통계 조사('00.~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한편 제정안은 캐릭터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(안 제5조) 및 기술개발의 촉진(안 제6조)을 규정하고 있고,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관련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비용추계 대상에서는 제외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

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 -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장르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, 이를 위해 편성되었던 연구용역 예산을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약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콘텐츠 장르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예산
 - 게임콘텐츠 96백만원, 방송콘텐츠 80백만원, 음악콘텐츠 78백만원
- 제정안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일반적인 수립 주기인 5년을 적용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하되, 첫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 해인 2027년에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함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